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2호 (2004년 8월 25일)
논문투고일자 : 2004. 05. 17
게재확정일자 : 2004. 08. 07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의 제도적 정비 방안

A Scheme on System Establishment of Customs Duties of Import Goods in Global EC

이재홍(Je-hong Lee)
동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

목 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관세분야의 제반 이론적 고찰
Ⅲ. 전자상거래 관세의 범위와 경제적 타당성
Ⅳ. 관세부과 논의 및 제도적 정립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Over the past decade, e-commerce on the business foundation of the Internet compound has entered extensive areas of international trade and social activ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system establishment of customs duties of import goods in Global e-Commerce. Today, USA, EU and some major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sisted to Tariff-free zone in customs duty. This study also will discuss the effect of imposition of import duties.

In order to impose customs duties, it needs to establish a system scheme, especially, because international payment of BtoC Commerce occur by the Credit Card. This study deals with Customs duties of import goods in Global e-Commerce.

Key Words: Electronic Commerce, Tariff Free Zone, Import Duties, Customs Adminstration, Credit Card, Electronic Trade

Ⅰ. 서 론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 개인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수입한 거래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의류, 구두, 핸드백 등 신변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지난해부터는 그동안 가장 많이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는 서적보다도 더 많은 거래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이 증가추세이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통관이 제한되는 음란물·불법의약품 등 불법적으로 밀수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건당 단가도 매년 소액화 되어 저가신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국내거주자가 과세대상물품을 고의로 면세범위(총과세가격 15만원)내로 분할하거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면세범위 내로 2건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합산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무형재의 거래가 최근 급속히 증대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와 같이 무형재와 의류, 구두, 핸드백 등 신변용품의 유형재에 대한 국내 BtoC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의 재정수입과 국민후생,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관세부과 여부의 논의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며 또한 해외의 순수우편물이나 특송운송물과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상품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심주도의 전자상거래 국제적 논의결과로 합의·공표되는 내용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당해 쟁점에 대해 국제적 논의와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청 및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부문의 내용을 정립하는데 있다. 이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의 분류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구분이 현재로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립을 하여, 관세부과의 당위성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관세부과를 통해 국내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와 국가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요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전자상거래 관세분야의 제반 이론적 고찰

1. 국가관점의 관세부과 고찰

WTO(1998)는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온라인 거

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1] 그러나 일부 개도국은 이러한 결정이 조세수입과 재정정책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무관세 관행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법제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WTO는 무관세의 영구화를 관철하려는 미국과 제4차 각료회의 시까지만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려는 여타국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결론이 유보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2] 이와 같이 각료회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서 관세부문에 있어서는 일단 과세차별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3]

미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1996년 12월 11일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기본틀" 초안을 발표하였고 1997년 7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4] 이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한 미국정부도 이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5] 따라서 미국은 인터넷 거래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거래를 왜곡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떠한 과세시스템이라도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거래 지역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모든 과세시스템은 간단하고 투명해야 한다. 셋째, 과세시스템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의 현행 과세구조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과세시스템은 인터넷의 특성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잠재적인 익명성, 소규모의 다중거래능력,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인 위치 파악의 난이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국제회의가 EU를 포함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과 동유럽국가들이 참여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옵저버(observer)자격으로 참가하여, 1997년 7월 8일 '본(Bonn) 선언'[7]을 채택하고 종료되었다. 본 선언은 인터넷 규제의 민간 자율 주도 추진, 정부역할 제한, 새로운 종류의 세금 부과금지, 암호프로그램 수출 자유화를 위한 노력과 각국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적극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의 탈국가성 인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7년 12월 미·EU 정상회담시 전자상거래의 세제와 관련하여 합의된 2대원칙은 온라인거

1)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1998.
2) 노영훈·연태훈·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p.36.
3) 홍범교,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재정포럼」, 2000.4, p.51.
4) 신승남,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논란",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제34호,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2, p.79.
5) 송선욱,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2, pp.109-141.
6)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http://www.whitehouse.gov, 25 Nov, 1997).
7) European Commission, "Global Information Networks : Ministerial Declaration,"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at Bonn*, July, 1997, pp.6-8.

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과 오프라인거래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 등이다.[8] 그리고 EU 역내에서는 전자적으로 판매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어떠한 전자적 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9] 그러나 EU는 과세지불유예는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배송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0]

또한 인도, 파키스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등 7개국은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의 공식합의에 거부 입장을 보인 것처럼 미국의 무과세원칙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자상거래 육성보다 세금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를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추적하고 사이버 공간의 탈세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주도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고 있다.[11]

2. 학문적 관점의 관세부과 고찰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부과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울러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관세부과여부에 대한 연구들을 이론적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물품의 관세부과여부에 관한 논문들은 일반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논문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세영 · 박영기(2003)의 연구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결제방법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간주하여 현재의 주된 대금지급결제수단 즉, 카드결제방법을 중심으로 관세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부과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하기에는 편익효과의 수치화, 계량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또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제홍(2003)의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 또는 기업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세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세부과를 국가의 국제수지나 국내산업보호차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유 · 무체물 또는 10만원(현재 15만원),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고 결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8.19.
9) http://www.kita.net/tri/month_viw.jsp?no=1701, 23 Oct., 2003.
10) 윤창인,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통권 제38호, 법무부, 2001.4, p.124.
11) 중앙일보, 2000.7.25, 15면.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
김세영 · 박영기 (2003)	·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 관세지급방법의 유형중 하나로 카드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이제홍 (2003)	·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 ·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유 · 무체물 또는 10만원(현재 15만원), 미화 100불 이하물품이라도 할지라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 특히, 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세관에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 카드관련 기관이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함
이호건 · 윤영한 (2002)	· 디지털 재화의 분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디지털 재화를 분류하는 이유로는 온라인으로 인해 전송되는 무형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제화를 구분하여 관세부과에 적용시키고 있다. ·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또는 법제화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정보기술협정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구태여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했음
김영춘(2001)	· 사이버 무역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존의 전통무역과 형평성 및 기존의 조세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라봄 · 특히 사이버 무역에 대한 과세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한 과세, 국가간 과세정보를 활용한 과세,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방안,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방안 등으로 고찰하고 있음
곽근재(2001)	· 전자상거래의 전자배달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WTO 결정의 경제적 및 다자간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수량적 중요성을 조사하고,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결정의 경제적 ·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고, 무관세에 중심을 두고 정리하고 있음
오웅탁 · 남구관 (2001)	·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함 · 무형재의 전자상거래는 수송부문에서의 자원의 효율성을 높임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음
송선욱(2001)	·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원칙을 고수한다면 관세수입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 사이의 과세차별 문제로 인하여 오프라인 업체의 반발 · 따라서 당분간 무관세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과세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연구하였음

자료 : 논자 요약정리

이호건 · 윤영한(2002)의 연구는 디지털 재화의 분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디지털 재화를 상품(Goods)으로 보자는 견해, 서비스(Service)로 보자는 견해 및 제3의 유형으로 보자는 견해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잠정적으로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재화를 분류하는 이유로는 온라인으로 인해 전송되는 무형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제화를 구분하여 관세부과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의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 물품에 대한 무세화를 통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WTO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재화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에는 지지가 필요하지만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또는 법제화에 대하여는 오프라인에서도 정보기술협정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구태여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했다.

김영춘(2001)은 사이버 무역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존의 전통무역과 형평성 및 기존의 조세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관세분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이버 무역에 대한 관세의 중립성 문제와 오프라인 사이버 무역의 급증에 따른 관세행정의 부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무역에 대한 과세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한 과세, 국가간 과세정보를 활용한 과세,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방안,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방안 등이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 방안에 두고 있다.

곽근재(2001)의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전자배달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WTO 결정의 경제적 및 다자간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수량적 중요성을 조사하고,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결정의 경제적·규범적 의미를 해석하고, 무관세 중심을 두고 정리하였다. 전자상거래 무역품에 대한 무관세 결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법적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 의미는 하나의 특정 배달방식에 대한 특혜적 대우가 다른 배달방식으로부터 무역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는 전자배달방법에 대한 특혜적 대우는 배달 수단에 근거하여 제품간의 구분을 금지하는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관세 전자상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자유화 약속의 제고와 함께, GATS 룰이기 때문에 동 룰의 명료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웅탁·남구관(2001)은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 시스템이 전통적 상거래하에서의 관세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관세와 관련되어 수송비의 발생여부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마치 관세동맹과 같이 무관세하에서 수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 특히 무형재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부문에서의 자원의 소비정도는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송선욱(2001)은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수입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나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원칙을 고수한다면 관세수입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 사이의 과세차별 문제로 인하여 오프라인 업체의 반발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분간 무관세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과세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연구하였다.

3. 전자적 재화분류의 고찰

1) 전자적 재화의 분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상품의 표현이 다양해졌으며, 또한 상품의 판매경로도 Off-line과

On-line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대 이슈가 이들 상품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이고, 이들 상품에 대한 분류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국가간 법률과 제도가 상이한 환경하에서는 이들 물품의 국제이동에 따른 현안인 내국세, 관세 그리고 상품이동 제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관세부과의 해결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전자적 무체물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의내려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제간 무역에 대한 이들 상품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자적 무체물은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영상물;[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포함],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라고 명시하고 있다.[12]

이에 전자적 재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디지털 컨텐츠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2> 참조)[13]

<표 2> 디지털 재화의 분류

분류	디지털 재화
디지털 컨텐츠 상품	택스트, 음성, 영상, 멀티미디어 등의 디지털 저작생산물, 텍스트 파일, 음악파일, 영상파일, 애니메이션, e-book, 컴퓨터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상품	웹서비스, e-Mail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서함 서비스, 검색서비스, 보안서비스(Firewall 서비스), 전자결제서비스, 온라인 컨설팅서비스, 사이버 마케팅 서비스, ISP, ASP, CSP, 위성방송 서비스, 유무선 방송서비스상품, 유무선 통신서비스상품

자료 : 박문서,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pp.50-51 (재정리).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하여 디지털 재화를 서비스 재화로 볼 것인가? 물리적 재화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재화영역으로 구분하여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를 서비스 재화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를 물리적 재화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미 체계화된 WTO/GATS의 범주에서 보다 명확하고 단일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물리적 재화의 분류 기준은 이미 HS에서 명료화되었으나, 디지털 재화의 분류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재화를 어떠한 범주에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14]

1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2,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1-0-2조의3
13) 박문서,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pp.50-51.
14) 이호건·유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279.

<표 3> 디지털 재화의 유형별 특징

유형	관점	특징 및 문제점
물리적 재화로 보는 견해	'전기' 등의 무형재도 물리적 재화로서 GATT에서 다루고 있음	-GATS의 영역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자유화에 유리 -구체적 분류기준을 HS code에 신설
서비스 재화로 보는 견해	디지털 재화는 물리적 재화의 특성보다 서비스 재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WTO 다수의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음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회원국에 따른 기준이 상이
제3의 유형으로 보는 견해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물리적 재화와 디지털 재화의 속성이 혼합되어 있음	-컴퓨터로 운영되는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 양재화중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움 -새로운 형태의 분류기준이 필요

자료 : 이호건 · 윤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280.

또한 온라인 컨텐츠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분명하지 않고, 아직 정확히 정의 내려진 바 없어 과세 원칙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국제사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품이 디스켓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면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관세법상의 수입의 정의 및 수입물품, 즉, 관세법 제2조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15]

2) 전자적 재화의 국가별 구분

국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재화의 경우, 재화무역에 관한 사안은 WTO 규범을 따르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상으로 전달되는 상품은 보다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WTO 규범은 무역에 관한 규제를 재화(Goods), 서비스(Service)의 경우를 GATT와 GATS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상품을 GATT에 규율되는 재화로 볼 것인지, GATS에서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전자적 상품을 재화(Goods)로 분류하고 GATT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적 재화의 전송은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전자적 재화의 그 자체는 전송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Goods)와 흡사한 영구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무체물인 재화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재화로 분류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GATT와 GATS를 비교해 볼 때 전자적 상품을 GATT로 규율하는 것이 자유무역확대에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16]

일본의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의 취급에 관하여 GATT에 명시된 원칙들인 최혜국 대우, 내

15) 김세영 · 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p.177.

16) WT/GC/16

국민 대우, 일반적 수량제한 배제 등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17]

그러나 EU는 전자적 재화가 서비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EU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는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재화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로 구분되며, 전자에 대해서는 GATT가 후자에 대해서는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또한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전자적 재화가 전통적인 의미의 유체적 재화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전자적 재화는 재화(Goods)와 서비스의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양자중 어떤 분야로 분류하든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접근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

결국 전자적 재화의 전송을 규율하는 규범은 다양하다. 미국이 주장하는 GATT 규칙을 택할 것인가 혹은 EU이 주장하는 GATS의 규칙을 택할 것인가 또는 미국과 EU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의 국가들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법이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방안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전자상거래 재화의 세부적 분류

cyber market 또는 global market은 기존의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초월하여 국경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거래형태의 경제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통관절차 및 관세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대상이고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한다.

<표 4>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간 전자상거래 유형은 동일한 재화라고 할지라도 또는 물리적, 디지털적으로 구분되고 또한 전송도 물리적 전송, 디지털전송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즉,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물리적 제품(physical goods)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디지털제품(digital goods)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CD, MP3, 서적 등의 물품은 기존의 무역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전자적 주문과 기존의 운송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 그리고 전자적 주문과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분류 코드를 마련해야만 관세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의 제품 수입은 주요국과 그리고 미국 및 국제기구에서 무관세화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전자상거

17) WT/GC/W/253
18) WT/GC/W/306
19) WT/GC/W/247

<표 4> 전자상거래 물품통관의 구분

구분	재화의 유형
전자적 주문→물리적 운송(물리적 재화)	서적, 잡지, 의류, 전자제품, 일용잡화, 화장품, CD, DVD, 음반
전자적 주문→전자적 전송(디지털 재화)	e-book,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MP3), 정보 및 잡지
물리적 전송 재화→전자적 전송 재화 전자적 전송 재화→물리적 전송재화	CD, DVD, 음악, 컨텐츠 제품, 전자서적, 정보재, 게임 S/W, 서적, 논문, 자료
사이트 직접 주문→판매(디지털 서비스재)	웹호스팅, 도메인네임, 호텔예약, 공연예약, 항공예약, 해외주식정보서비스 이용, 외국사이트 회원가입

자료 : 논자작성

래를 통한 유형의 제품 및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S/W 등 디지털 재화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관세법 등 무역관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문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배달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 즉, 기존의 수입통관 절차와 같다.

4. 전자상거래 수입 및 사업장 정립

우리나라 관세법[20]에서 수입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될 때의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2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다.[22]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질 때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 그 물품이 외국물품인가, 외국의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품인가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물품이 외국의 사업자에서 제작하거나 또는 외국소유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인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제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내국사업장에서 이루어지냐 또는 외국사업장에서 이루어지냐의 구분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수출이냐 수입이냐 또는 국내거래인가로 명확하게 정의된다. 그래야만 구매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 관세부과의 또 하나의 문제인 관세부과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표현하며, 여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

20) 관세법 제2조의 1.
21) 관세법 제3조의3 가.
22) 관세법 제241조제1항.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23] 전자상거래 사업장이 사무소, 영업소 등 사업의 물리적 실체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실체를 갖지 않고, 법상 국내사업장으로 파악되지 않는 광고, 선전,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장소[24]만을 갖거나, 이러한 장소조차 갖지 아니한 채 국내시장을 상대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고정사업장을 물리적인 실체를 수반하는 장소이므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연결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보충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서버의 존재이다. 이는 기존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상점, 지점 등의 역할을 서버 혹은 이를 운영하는 인터넷정보제공자가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고정사업장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능을 갖춘 물리적 설비이고[25], 또 하나는 소정의 기능을 하는 인적 설비 즉, 종속적 대리인[26]이다. 만일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관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연결할 것인가이다. 이는 사업자 혹은 인터넷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서버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점,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전자상거래 관세의 범위와 경제적 타당성

1.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의 필요성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해외에 개설한 후 1,200여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음란 DVD를 팝송 CD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밀수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가족간의 합법적인 외화송금으로 가장하여 미화 1천불 미만씩 분할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사례 등으로 인해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발생하였다.[27]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쇼핑몰사이트, 경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국제간 불법물품 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거래자 상호간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한 가짜상품, 음란물, 마약 등 밀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Cyber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간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다.[28]

---

23)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24)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25)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26)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27) http://www.customs.go.kr/hp/cms/pa___000/news/pacb_000/pacb_000.html(서울세관 3조사관, 2004.5.14)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무형재의 거래가 최근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장차 국가경제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제품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관세부과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무관세화지대(tariff-free zone)를 주장하고 있다.[29]

그리고 전자무역에서 거래대상이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는 경우 전자화된 디지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관세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우편배달과 특급탁송에 의한 거래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정보교환의 거래가 편리함으로써 수출입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관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과세의 이중성을 야기시킨다. 이는 동일제품에 대한 오프라인 전자무역은 관세부과이나 온라인 전자무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제품과 의류, 구두, 핸드백 등 신변용품의 물리적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유무가 국가의 재정수입과 국제수지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부과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상거래 관세부과 범위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부과에 관한 문제는 관세기술상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거래의 경우 비과세하고 오프라인거래의 경우 과세한다는 원칙에 대하여는 세계 각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재화는 주로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도 매체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영화필름이나 음반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낮은 세율이기는 하지만 매체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이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과세의 중립성 유지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30]

우리나라는 현재 온라인거래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거래가 가능한 재화의 관세부과 예를 보면 <표 5>와 같다.

한국의 입장은 현행 관세법에 비추어보더라도 무관세원칙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화를 필름 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미터당 6원-2,040원의 관세가 부과되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시에는 무관세 원칙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음반의 경우 레코

28) http://www.customs.go.kr/hp/cms/pa___000/news/pacb_000/pacb_000.html(관세청 심사정책국 C조사총괄과 2004.3.12)
29) OECD, "Mesurering Electronic Commerce : Internationl Trade in Software," DSTI/ICCP/IE(98)3/FINAL, 1998.
30) 김유찬·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드·테이프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나 인터넷을 통한 MP3나 RA파일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방법에 따라 관세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서적 관련물, 게임물과 컴퓨터 관련제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제품 등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으로 국내기업의 피해와 관세수입의 유실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표 5> 온라인 거래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예

무관세대상	현행 수입 형태	관세 부과 여부	
		현행 거래	인터넷 거래
디지털 신호 형태 - 컴퓨터 S/W -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무관세	무관세
	인공위성 전송	무관세	
영 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세 형태로 2,040원-6원/m등[1]	무관세
음 악	음반(CD)에 수록	8%	무관세

주: 1) 2,040원/m은 40m 이상인 필름에 대한 종량세이며 필름 종류에 따라 종량세율은 다소 다름.
자료 : 산업자원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 p.11.

3. 관세부과여부의 경제적 타당성

관세는 수출과 수입을 조절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국 및 수입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관세는 수출입국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킨들버그(1973)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는 생산효과(보호효과), 소비효과, 수입효과, 재분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효과, 교역조건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관세의 편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31] 해외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물품구매도 금액이나 물품의 종류도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과 국제수지효과 등의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대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효과를 수치화,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나 관세부과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장거래의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32]

그러나 한편 전자상거래의 무관세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전통적 거래방식에 의한 재화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재의 거래로 전환하여 거래할 경우 전통적 상거래에 비하여 관세와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전송으로 수송부문에서 수송비가

31) Charles P. Kindleberger,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Inc., 1973, p.101.
32) 김세영·박영기, 전게서, pp.165-166.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무역창출의 경우 후생을 증가시키고, 무역전환의 경우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33] 이처럼 관세와 관련되어 수송비의 발생여부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마치 관세동맹과 같이 무관세하에서 수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 특히 무형재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부문에서의 자원의 소비정도는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4]

<표 6> 관세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 관세수입 증대 및 관세누수방지 효과	•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정보형태의 온라인 거래 제품에 대한 관세수입 감소 방지 및 관세수입 증대
		• 형평성 제고효과	•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관세 취급의 형평성 제고
		• 디지털 컨텐츠 산업 보호효과	• 디지털 컨텐츠산업 기반확충 및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보호
	부정적 효과	• 행정비용 및 사회적 비용 발생효과	• 관세당국의 행정업무 과부하 발생 • 관세당국의 징수비용과 관리비용 증가 • 소비왜곡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 소비자 후생감소	• 전자상거래 무관세 효과 상쇄로 인한 소비자 해당 향유 이익의 감소

자료 : 김세영 · 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p.165.

Ⅳ. 관세부과 논의 및 제도적 정립 방안

현행 수입물품의 관세면제는 관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물품의 형상 ·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된다.[35] 이의 물품은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6]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거래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국제수지나 국내산업보호차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유 · 무체물 또는 15만원 이하물품(우체국 택배

33) Deng-Shing Huang, "Transport Cost and the Welfare Effect of Customs Un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Discussion Paper No. 9604. February 1996.

34) 오웅탁 · 남궁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후생효과",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2.(한국관세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sc.org, 20 Nov., 2003)

35)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①의4.

36) 관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②의1.

면세)과 미화 100불(특급 탁송물품 면세)이라도 할지라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 개인들이 구매하는 물품이 미화 100불 또는 15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해외쇼핑몰에서 결제하고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 할 때 그에 따른 기본적 제도적 정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의해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비록 결제금액의 과다에 구분됨이 없이 관세는 부과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세부과의 효율적 정립방안을 김영춘(2001)[37]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거래정보 확보방안으로서 사이버 무역에 대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지불결제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자무역의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필수적으로 사이트 식별번호(site identifier)를 부여하여 사이버 무역 주체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셋째,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방안이다. 즉,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소비자가 자국의 세무당국에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한다.

1. 디지털 상품의 관세부과의 제도적 정립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디지털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는 미국, EU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이 아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은 거래의 특성으로 볼 때 정확히 거래빈도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제휴업체, 아웃소싱업체 그리고 솔루션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을 디지털화된 물품으로 받을 때 수입비용이 증가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은 관세를 부과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음반이나 영화제품, 비디오물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디지털 상품은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또한 수입가격의 면세범위를 낮출 경우,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및 외환의 통제를 회피하기가 쉽다.[38]

게다가 대외거래제한품목인 음란물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들의 국내반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수입도 물리적 상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적용을 통해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수지와 국내산업보호라는 관세의 효과차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디지털 상품을 수입하는 당사자에게는 관세지급 및 외환통제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37) 김영춘,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분야의 과세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pp.13-14.
38) 이제홍,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에 관한 논의",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3, pp.38-42.

디지털 상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제간거래에 무관세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무관세화를 하고 있다. 이를 관세화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물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의 통관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이들 무체물에 대한 국제간 거래의 통계자료는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상품들의 실제적인 거래는 상당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S/W, MP3, DVD, 도메인네임, 오락,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성인물 및 음란물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에서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무체물도 재화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제간 거래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래로 자리잡았고, 이들 무체물은 세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재경부 등의 외국환관리 측면에서 통제하여 관리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국제결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을 다운받을 경우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관세는 면제되고, 이를 음반, CD로 유체화되면 관세가 부과되어 세금부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체물의 경우 세관에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이는 외환관리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국내기관들이 미국에서 도메인 네임을 부여받을 도메인 네임을 유지하기 위해 1년마다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도메인을 부여받은 기관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기관이 이용대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해외에서 도메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며, 부여받더라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사용빈도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외화낭비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을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따라서 이들 외환결제만큼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술의 종속을 막을 수 있고 국내기술개발을 유통하고, 외화의 국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와 관세관리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제휴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또한 디지털화되어 물품이 전송되어지면 그에 따른 대금결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거래대금 결제과정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이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은 신용카드사나 외국환 거래은행과 같은 국내의 지불기관을 이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일 것이다.

<그림 1>은 전자전송물의 무역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로 신용카드회사가 대리납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세를 징수, 납부하는 방식의 관세징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수입업자의 전자 전송물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지불기관으로는 수입업자의 국내외 외국환거래은행과 카드회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회사가 소비자의 카드사용 내역정보를 가지게 되므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세 징수 편의상 관세의 신고와 납부는 카드사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해당 전자전송물품에 관세율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남아있다.[39]

<그림 1> 신용카드회사와 세관과의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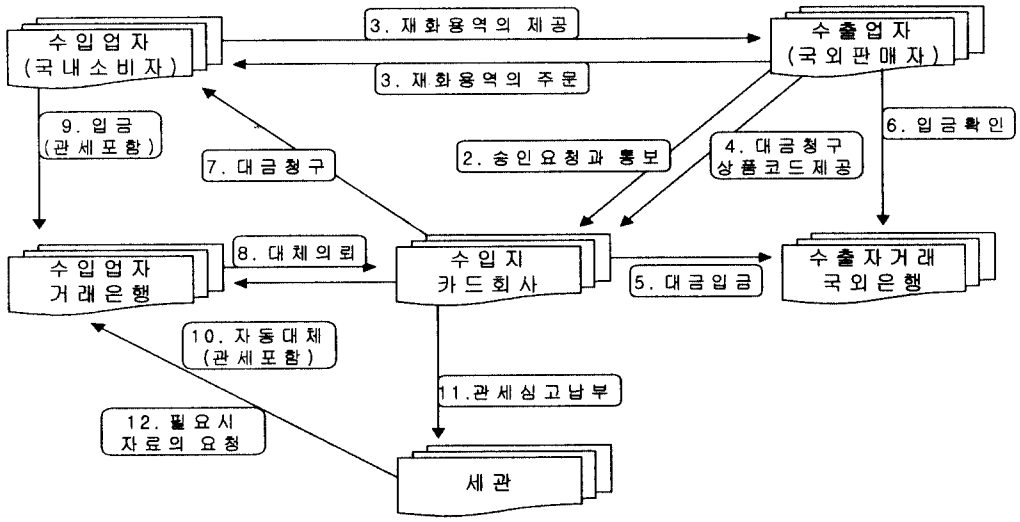

자료 : 전게서, p.174.

2. 물리적 상품의 관세부과의 제도적 정립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리적 제품 및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S/W 등 제품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박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관세법 등 무역관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한다.[40]

그러나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과 그리고 해외의 친지 등이 보낸 우편물과 특급탁송 물품 등을 구별하여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관세와 내국세를 지급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반면, 전자상거래에서는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15만원 미만 거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해외쇼핑몰로부터의 물품구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적어지고 또한 국내산업의 위축과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수입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39) 김세영 · 박영기, 전게서, pp.173-174.
40) 이세홍, 전게서, pp.38-42.

현재 물리적 상품 또는 특급배달은 해외에서 친지, 지인이 보내온 물품인 경우, 우편물(친지, 친우 등의 선물)은 15만원 미만인 경우에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반입 금액이 작을 뿐만 아니라, 주로 내국인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외전자상거래(해외쇼핑몰)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송달인 경우, 15만원 및 특급배달인 경우 미화 100불의 형태로 운송되어올 때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국내에서 물품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 국지수지 그리고 재정수입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당사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규모가 구매금액이나 구매규모가 작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구매하는 당사자가 다수가 존재하게 되면 일반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양과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외국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다양해지고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 국내산업 그리고 재정수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의 물품에 대해 저가신고라든지 부당면세 등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급택배업체에 의해 특급운송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미화 100불이지만, 20만원 미만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관세를 대납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 20만원 이하에서는 구매개인에게 어떠한 부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쇼핑몰의 구매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물품을 무역업자가 수입(관세지급, 내국세지급)한 경우와 전자상거래상에서 각각의 개인이 구매한 경우, 소비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외국제품의 소비자가격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V. 결 론

전자상거래의 국제거래에 있어 관세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수입의 정의, 품목분류의 문제, 관세평가 즉 관세율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 의한 전자 전송물이 재화라고 간주되어야 그 결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송(transmission)이 명백하게 수입으로 정의되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수출입품목 분류 방법 및 구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는 거래의 형태가 온라인 거래인지 오프라인 거래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문, 결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처리하고 유형재를 실제로 이동시키는 거래

의 경우에는 재화가 관세선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므로 전통적인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관세 부과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온라인 거래로 수입(다운로드)되는 경우 거래 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전자화된 디지털 정보가 국경을 통과하게 되어 관세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일제품에 대한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관세부과이나 온라인 거래는 무관세로서 과세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성질의 상품을 유형재 형태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전자적 형태로 수입할 경우 비과세 한다면 수요가 종래의 오프라인 재화로부터 온라인 전자적 형태의 수입으로 급속히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수입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은 동일한 재화에 대한 과세가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느냐 오프라인 거래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체제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영화나 음악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경우에도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영화나 음악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세정책적 문제라기 보다는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에 기인하는 요인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BtoC 소액거래의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유형 및 수입동향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마약·음란물 등 밀수와 저가신고·부당면세 등 우범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분석, 조사업무 전담 수행을 위하여 서울세관에 Cyber 밀수단속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더욱 단속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효성과 정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시스템이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하의 관세제도와 균형을 이루고, 특히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상품이든 이를 물리적 상품이든지 간에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상품도 그 해외쇼핑몰을 통하여 수입되고 그 금액이 미화 100불(특급탁송물품 면세한도), 15만원(우체국통관 면세한도)이하라 할지라도 그 거래빈도 등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국제수지 측면, 재정수입측면 또는 국내산업보호측면에서 관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디지털화되어 물품이 전송되어지면 그에 따른 대금결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거래대금 결제과정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즉, 지불결제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자무역의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곽근재, "무관세 전자상거래 경제적·규범적 의미",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김세영·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김영춘,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분야의 과세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김유찬·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노영훈·연태훈·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박문서,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산업자원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

송선욱,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오응탁·남구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후생효과",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8.19.

윤창인,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법무부, 2001.4.

이원균·전은식, "전자상거래에서 조세정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2호(하),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3.

이제홍,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여부에 관한 논의",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3.

이호건·윤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신승남,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논란",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제34호,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2.

중앙일보, 2000.7.25, 15면

홍범교,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재정포럼」, 2000.4.

KOTRA, 「해외동향」, 2000.5.17.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http://www.whitehouse. gov/WH/New/commerce. 25 Nov., 1997).)

Kindleberger, Charles P.,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Inc., 1973.

Huang, Deng-Shing, "Transport Cost and the Welfare Effect of Customs Un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Discussion Paper No.9604. February 1996.

Directive 2002/38/EC

European Commission, "Global Information Networks: Ministerial Declaration,"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at Bonn*, 6-8 July, 1997.

OECD, "Measurering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DSTI/ICCP/ IE(98)3/FINAL, 1998.

OECD, "Mesurering Electronic Commerce : Internationl Trade in Software," DSTI/ICCP/IE(98)3/FINAL,1998.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1998.

http://www.customs.go.kr, 26 Jun, 2004.

http://www.customs.go.kr/hp/cms/pa___000/news/pacb_000/pacb_000.html(서울세관 3조사관, 2004.5.14)

http://www.customs.go.kr/hp/homepage/wok/PDAS231_01.htm, 15 Mar, 2004.

http://www.dhl.co.kr/html/cs/k_cs_faq.html. 20 Nov., 2003.

http://www.e-ctl.com, 23 Oct., 2003.

http://www.kidi.re.kr, 16 July, 1997.

http://www.kita.net/tri/month_viw.jsp?no=1701, 23 Oct., 2003.

http://www.krsc.org(20 Nov., 2003; 28 July, 2004)